

제1급감염병(17종)

즉시 신고

- | |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가. 에볼라바이러스병 | 차. 보툴리눔독소증 |
| 나. 마버그열 | 카. 야토병 |
| 다. 라싸열 | 타. 신종감염병증후군 |
| 라. 크리미안콩고출혈열 | 파. SARS |
| 마. 남아메리카출혈열 | 하. MERS |
| 바. 리프트밸리열 | 거.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|
| 사. 두창 | 너. 신종인플루엔자 |
| 아. 페스트 | 더. 디프테리아 |
| 자. 탄저 | |

제2급감염병(21종)

24시간 이내 신고

- | |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가. 결핵 | 카. 유행성이하선염 |
| 나. 수두 | 타. 풍진 |
| 다. 홍역 | 파. 폴리오 |
| 라. 콜레라 | 하. 수막구균 감염증 |
| 마. 장티푸스 | 거.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|
| 바. 파라티푸스 | 너. 폐렴구균 감염증 |
| 사. 세균성이질 | 더. 한센병 |
| 아.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| 러. 성홍열 |
| 자. A형간염 | 머. VRSA 감염증 |
| 차. 백일해 | 버. CRE 감염증 |
| | 서. E형간염 |

제3급감염병(28종)

24시간 이내 신고

- | |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가. 파상풍 | 거. AIDS |
| 나. B형간염 | 너. CJD 및 vCJD |
| 다. 일본뇌염 | 더. 황열 |
| 라. C형간염 | 러. 뎅기열 |
| 마. 말라리아 | 머. 큐열 |
| 바. 레지오넬라증 | 버. 웨스트나일열 |
| 사. 비브리오패혈증 | 서. 라임병 |
| 아. 발진티푸스 | 어. 진드기매개뇌염 |
| 자. 발진열 | 저. 유비저 |
| 차. 쯤쯤가무시증 | 쳐. 치쿤구니야열 |
| 카. 렙토스피라증 | 커. SFTS |
| 타. 브루셀라증 | 터.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|
| 파. 공수병 | 퍼. 엠폭스 |
| 하. 신증후군출혈열 | 허. 매독 |

제4급감염병(23종)

7일 이내 신고

- | |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가. 인플루엔자 | 거. MRSA 감염증 |
| 나. 회충증 | 너. MRPA 감염증 |
| 다. 편충증 | 더. MRAB 감염증 |
| 라. 요충증 | 러. 장관감염증 |
| 마. 간흡충증 | 머. 급성호흡기감염증 |
| 바. 폐흡충증 | 버.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|
| 사. 장흡충증 | 서.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|
| 아. 수족구병 | 어.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|
| 자. 임질 | 저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|
| 차. 클라미디아감염증 | |
| 카. 연성하감 | |
| 타. 성기단순포진 | |
| 파. 침규곤딜롬 | |
| 하. VRE 감염증 | |

법정감염병 분류체계

- SARS :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
- MERS : 중등호흡기증후군

- VRSA :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
- CRE :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

- AIDS : 후천성면역결핍증
- CJD : 크로이츠펠트-야콥병
- vCJD : 변종크로이츠펠트-야콥병
- SFTS :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

- VRE :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
- MRSA :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
- MRPA : 다제내성녹농균
- MRAB :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

법정감염병 분류기준

구 분	제1급감염병	구 분	제2급감염병	구 분	제3급감염병	구 분	제4급감염병
특 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 -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	특 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 -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	특 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	특 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1급~제3급 감염병 외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
종 류	17종	종 류	21종	종 류	28종	종 류	23종
감시방법	전수감시	감시방법	전수감시	감시방법	전수감시	감시방법	표본감시
신 고	즉시	신 고	24시간 이내	신 고	24시간 이내	신 고	7일 이내
보 고	즉시	보 고	24시간 이내	보 고	24시간 이내	보 고	7일 이내
벌 금	500만원 이하	벌 금	500만원 이하	벌 금	300만원 이하	벌 금	300만원 이하

